



감 사 원

바른감사
바른나라

수신 (사)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최현 귀하 (우690-825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059-1번지 3층)

(경유)

제목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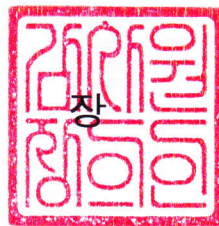
1.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

2. 귀하께서 2012. 2. 9.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(접수번호: 2012-공익13호, 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참여과정 관련)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3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붙임 : 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1부. 끝.

감 사 원



감사주사
보 유춘숙

시설사무
관 송주천

감사청구 전결 2012. 12. 28.
조사국 조 신해철
사2과장

협조자

시행 조사2과-1184

(2012. 12. 28.)

접수

우 110-706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(삼청동, 감사원)

/ <http://www.bai.go.kr>

전화번호 02-2011-3529

팩스번호 02-2011-2765

/ saltee@korea.kr

/ 부분공개(5,6)

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

(제주도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참여과정 관련)

청구이유	감사결과
<p>1.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 관련</p>	<p>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관광공사, 제주관광협회 및 범국민추진위원회, 범도민추진위(이하 “범도민위”) 등에서 집행한 예산은 40억 5,200만여 원입니다.</p> <p>이 중 제주관광공사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·구매(3,505만여 원 상당)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는가 하면, 재단이사를 초청하면서 미화 2,839달러 만큼 항공요금을 과다 지급하여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.</p> <p>나머지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위법·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/p>
<p>2.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(국제전화사용료) 납부 등에 대한 예산지출의 정당성 관련</p>	<p>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에 사용한 공공운영비(국제전화사용료)는 총 228억 2,819만여 원(범도민위에서 납부한 9억 7,900만 원 포함)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/p> <p>또한,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(전화사용료)를 포함한 예비비 81억 원을 지출하였으나,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'12. 7. 20. 제297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최종 승인처리하였습니다.</p>
<p>3.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, 공공사무저해 관련</p>	<p>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소속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,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/p>

청구이유	감사결과
<p>4.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관광공사, KT, 뉴세븐원더스재단,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 관련</p>	<p>⇒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소속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사이에 '08. 12. 8 체결된 “Standard Participation Agreement” 표준참여계약서가 존재하고, 위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/p> <p>또한,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민간회사 및 외국재단이라 확인이 곤란합니다.</p> <p>그리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주체 간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수사권이 없는 등으로 확인이 곤란합니다.</p>
<p>5. 행정의 자생단체,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관련</p>	<p>⇒ 범도민위(위원장 부만근)에서 기탁자로부터 전화 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 받은 것이어서 이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·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</p> <p>이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질의에 대하여 '12. 8. 9. 행정안전부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그리고 범도민위에서 문자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 7,9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범도민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표업무대행을 요청하고 위 업무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·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</p> <p>한편, 범도민위에서 임대하여 사용한 ‘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’가 「전파법」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 위 문자투표기 제작·임대업체인 (주)가오누리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재조치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.</p>